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 26 선고 2021가단86326 판결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전 문

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정형윤, 정지혜

피 고 1. A

2. B

3. C

4. D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1.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8.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고 A은 6,466,462원의, 피고 B는 765,262원의, 피고 C은 657,098원의, 피고 D은 500,513원의 각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1. 5.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42,672,289원을 36,205,827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5,049,975원을 4,284,713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336,199원을 3,679,101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3,302,891원을 2,802,37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35,666원을 10,625,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과 E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 각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와 피고들의 각 배당액을 변경하기로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광민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파주시 전 258㎡
2. 경기도 파주시 담 2228㎡
3. 경기도 파주시 담 1018㎡

- 이 상 -

청 구 원 인

1. 배당이의

원고는 소외 E에 대한 구상채권자로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 라고 합니다)에서 2021. 5. 4.자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 E와의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원고의 구상채권 범위 내에서 배당이의를 하였습니다(갑제1호증 -배당표, 갑제2호증 - 배당기일조서)

2. 원고의 소외 E에 대한 구상권

원고는 소외 E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소461795 구상금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금 9,768,423원 및 그중 9,636,056원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19. 12. 31.까지는 연 10%의, 2020. 1. 1.부터 2020. 12. 8.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구상금 채권이 있습니다(갑제3호증 - 이행권고결정).

위 구상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는 소외 E의 부탁을 받고 2015. 7. 8.경 소외 E이 G은행 등에 대해 부담하게 될 각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였는데, 소외 E이 2019. 4. 3. 원금연체를 사유로 한 부실사고를 발생시켜 원고가 2019. 5. 22. G은행에 총 10,687,602원을 대위변제하게 되었습니다(갑제4호증- 대위변제증서).

이에 원고는 대위변제일인 2019. 5. 22. 대위변제액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가. 소외 E의 처분행위

소외 E는 2020. 9. 8.에 피고들과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동기소 2020. 9. 8. 접수 제80823호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갑제5호증의1내지3-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사해행위 취소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소외 E에 대해 2019. 5. 22.에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고, 이 사건 계약은 그 이후인 2020. 9. 8.에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2) 채무자의 무자력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 E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적극재산은 달리 없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근로복지공단 외 13명에 대한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무자력 상태였습니다(갑제1호증 배당표 참고).

(3) 사해행위

채무자 소외 E 은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킨 경우에 사해행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소외 E 이 무자력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 대해 채권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4) 사해의사

이 사건 계약은 소외 E 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체결되었으므로 채무자인 소외 E 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의 악의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들의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배당이의(원상회복의 방법)

소의 **E**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 방법으로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 272311 판결 외 다수 판결 참조).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원고의 채권액을 각 안분하여, 피고들의 각 배당액에서 피고 **A**은 금 6,466,462원(=배당액 42,672,289원/피고들의 배당 총액 55,361,354원 $\times$ 원고의 배당이의액 8,389,334원)의, 피고 **B**는 금 765,262원(=5,049,975/55,361,354 $\times$ 8,389,334원)의, 피고 **C**은 657,098원(=4,336,199/55,361,354 $\times$ 8,389,334원)의, 피고 **D**은 500,513원(=3,302,891/55,361,354 $\times$ 8,389,334원)의 각 배당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2,235,666원에서 10,625,000원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